

UN 문서번호 E/CN.4/1996/39/Add.1
1995년 11월 21일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 회기
임시 의제항목 8

모든 형태의 구속과 구금상태에 처해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가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3/45에
의거하여 한국방문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

내용

	단락
서설	1 - 5
I. 최근 상황	6 - 20
II. 주요 관찰 및 관심사항	11 - 45
III. 권고안	46
부록. 특별보고관이 한국방문기간 중 만난 사람 명단	

서설

1. 이 보고서는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3/45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문 1993/268에 따라 준비되었다. 보고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야마드 후세 인씨가 1995년 6월 25-30일 사이 한국을 방문한 동안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민간단체(NGO)들과 개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2. 당초 특별보고관은 남북한 모두 방문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시기에 그의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정부의 형편이 되는 대로 속히 그같은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그에게 보내준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 그는 그의 방문일정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보내준 협력에 높이 감사한다. 그는 특히 각료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의 한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도록 도와준 외무부장관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부관리들을 만나겠다는 특별보고관의 요청이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방문기간 중 느꼈던 개방적인 분위기도 아울러 언급하는 바이다. 그는 방문 일정 중 자유롭게 그의 임무와 관련된 부문의 사람들을 만났고,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본질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

4. 특별보고관은 방문일정을 효과적으로 짜준 한국주재 유엔개발계획(UNDP) 및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5. 방문기간 중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 대표들과 비정부 인권단체 대표들, 공인된 혹은 공인되지 않은 노조 대표 및 조합원들, 언론 및 관련단체 사람들, 학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났다. 또한 자신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활동으로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 정통한 개인들도 만났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다 구금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구금중인 사람들의 가족과의 만남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비정부 민간단체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비정부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별보고관이 만난 사람들의 목록은 본 사료의 <첨부1>에 실려있다. 그러나 그 목록이 전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보고관은 방문기간중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그의 방문기간중 그가 만난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써준 테 대해 감사한다. 또 한가지, 그가 만난 사람 중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방문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한국방문에 대한 그의 소견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문기간중 일차적 토론주제가 되었던 문제들과 그의 임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1. 최근 상황

6. 우선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인권 전반을 보충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많은 조치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그의 관심을 끈 중요한 조치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간략한 설명으로 한국에서의 인권보호 현황의 완전한 상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한 그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그려보고자 함이다.

7. 1993년 한국정부는 5, 6공 때 유죄판결 받은 수감자 중 일부에 대해 사면을 감행했다. 같은 해, 각료들은 애초 국가보안법을 민주사회에서의 공공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법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몇 주 후, 정부는 국가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내렸다. 1993년에 또한 정부는 피구금인이 부당대

우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문절차를 개정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 뒤 검찰은 심문절차 개정안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구금인 방문을 막는 것을 금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변호인의 피구금인 방문을 막는 것은 헌법의 적구금인 행
 팔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검토하기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설립했고, 구회는 안 사법개혁을 검토하기
 기부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994년, 안기부 업무 감축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 법을 통
 국회 정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95년,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두달전, 서울공판원 설립되었다. 국
 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10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창복씨를 무죄판결 관련 혐의로 1심
 했다. 이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례의 중요
 획기적 판결이었다.

8. 이같은 조치들은 인권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적, 법적 안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특별보고관은 1980년대와 그 이전의 일반적인 인권상황을 상기하며, 그 이래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현 김영삼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더욱 그러하다. 그는 1992년 12월 직선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공공연히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에 기여해왔다.

9.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하며 한 평을 상기한다. 인권이사회는 일반법과 형법으로도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법행위를 다루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인권이사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인권이사회는 정치적 의사를 이유로 사람들을 계속 수감시키는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은 국내법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항에 좀 더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은 황석영씨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3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이 1994년 9월 29일 채택한 결정문 29/1994, 30/1994를 상기한다. 실무그룹은 이들 구금사건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권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라고 결정내렸다.

10. 한국은 최근 몇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에 점차 높은 사명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 인권기관의 주목대상으로 남아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경제발전이 주목하며, 이것이 국가가 인권신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상황이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배경이다. 정부가 계속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할 목적으로, 그는 의사표현의 자유권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에 관한 주요 관찰사항과 관철사를 표현하고자 한다.

II. 주요 관찰 및 관심사항

황석영씨 사건

11.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4/1995/32, 116-118문장)에서 특별보고관은 작가 황석영씨가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7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특별보고관은 다행히 그를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의 건강상태는 양호해 보였으며, 귀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별보고관의 관심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때때로 황석영씨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언급이 그의 구금상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 편견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황석영씨의 구금 조사문제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12. 특별보고관은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행사와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문제사이에 일어나는 논란에 관해 알고있다.

13.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동, 동조한 사람은 누구나 최고 7년형까지 처벌가능케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 5조, 6조에서는 적에게 이로운 국가기밀이나 자료를 수집, 은닉, 전달하거나,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하는 것

을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4. 전하는 바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당시에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국기 휘날리며, 특별보고관 보안관 -대부분 7조 위반으로- 위반 혐의로 체포, 유죄판결받거나 체포에 회당해 있었다.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권이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한된 많은 고인의 표현의 자유권 사건이 특별보고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받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방북
- 북한 주민이나 관리와 접촉, 대화하고 이들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
- 사회주의적 견해 피력
-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비판

15.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권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그의 두번째 보고서 48-51 문장을 언급하고 있다.(4/1995/32)

16. 특별보고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안보가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권 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정도의 위협이 되려면 최소한 그 개인이, 특히 폭력사용을 선동, 고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할만큼의 능력과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 어떤 결과가 수반되며, 왜 그같은 결과가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에 되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17.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적용시 일부 주요개념의 적용범위와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같은 개념에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동"한다거나 "적에게 이로운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이 법원의 해석에 따라 공공연히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학술적 내용의 자료들 소지한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포함한 공공문제에 관한 사고, 믿음, 의사표현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우려감을 표한다. 그는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매우 일반적이거나 사소하기까지 한 발언을 반국가단체에 이룰 수 있다는 불명확한 근거로 처벌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에 적용된 증거의 원칙에서는 혐의가 된 자신의 행위가 사실상 적을 이롭게 했는지를 피고인 자신이 명확히 인식했는지, 또는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보고관은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학술논문들을 단순 소지한 것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을 이롭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알았어야만 하는 것을 알지못했다는 죄를 근거삼아 유죄판결받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이다.

18. 특별보고관은 그가 접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의 대부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시킬 만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음을 매우 우려하며 보고한다. 그는 또한 표현의 자유실천과 국가안보의 유지에 관련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혹은 일반의 일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 의무에 대한 고려가 명백히 부재함을 우려한다. 위에서 언급한(제7절 참조) 이창복씨의 사건은 매우 드문 예외적인 경우이다. 더 나아가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그 어떠한 사례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의 표현으로 인해 소추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사상내용과 국가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혹은 군사적 위협 간에 납득할 만한 연계가 없다. 의심을 받고 있는 견해의 표명이 국가의 안보에 불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이러한 법적절차에 있어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 또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평범적인 자유재량을 걱정스럽게 여기며 그 독단적인 행동을 경고한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특별보고관은 국가안전기획부의 관리들을 만나 국가안전보장예 관한 그 기관의 위상, 그 기관에 주어진 권력의 사용에 대한 정부와 해명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안기부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간주되는 표현을 함으로 인해 체포되고 소추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지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이것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안기부의 부당한 간섭을 조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 황석영씨의 사건(위의 제1절 참조)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황씨는 특별보고관에게 그의 아내와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무엇보다도 가령 안기부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황씨의 아내와 아들은 이 방문에 동행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황씨와 동일한 소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황씨에 의하면 안기부 공무원들이 황씨에게 황씨가 안기부의 수사에 협조한다면 황씨의 아내와 아들은 체포되지 아니하고 귀국할 수 있음을 약속했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에 안기부 공무원이 황씨에게 황씨의 아내와 아들이 귀국하기에는 아직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안기부 공무원들이 황씨사건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21.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기초하여 볼 때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입법과 시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등의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

22.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재소자는 교정당국에 의해 그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구받는다라는 사실이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끌었다. 특별보고관이 전하는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관행은 법무부가 1969년 제정한 행정규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 행정규율의 목적은 석방이후에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보안관찰을 위한 것이다.

23. 재소자들이 이러한 사상전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재를 당한다. 즉 가석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서신왕래와 면회에 관한 그들의 권리가 제한된다.

24. 특별보고관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관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보고관은 그가 인권위에 제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다룬 이전의 보고서의 제1장 B섹션을 언급한다. 그는 특기 사상의 자유는 방해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그 보고서의 제39절을 인용한다.

25. 더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관행은 구금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특별보고관은 1957년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표준규율 제6원칙 제1항과 정치적인 또는 다른 사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1990년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중 제2원칙을 인용한다. 자신의 이념적 신념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재소자에 대한 제재의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러한 원칙들과 상충하지 않는다.

26.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끈 몇가지 사례에서 재소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사상전향을 함은 그들이 결코 가지지 않았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응하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법상 단지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행정적 기타 다른 제재를 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고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소자들이 소급하여 자신의 잘못을 자인함을 요구하는 것은 감금되거나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1988년 원칙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위 원칙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도록 강요할 의도로 구금되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부당히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속자의 표현의 자유

27.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년 동안에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28. 특별보고관은 교도행정제도가 대체로 1923년 일본점령기에 공포된 법령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일반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특히 재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 개선되어왔던 경향을 따라 이러한 행정법에 의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재소자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알게 되었다.

29. 특별보고관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구금된 황석영씨는 그의 감옥에서의 집필 활동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알려 주었다. 황씨의 설명에 의하면 그가 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하나의 예로 그가 저술한 책을 재발간하면서 새로운 서문을 감옥에서 집필하는 중 일어난 일을 거론했다. 황씨가 집필을 위해 종이를 달라고 하자 교도당국은 그가 집필하고자 하는 분량을 알려 달라고 하였고, 그가 10페이지를 쓰려고 한다면 백지 10장을, 20페이지를 쓰려고 한다면 백지 20장을 주겠다고 말을 덧붙였다. 황씨는 교도당국에 사정이 그러하다면 차라리 서문을 편지형식으로 쓰겠다고 알렸고, 그 뒤 교도당국은 그에게 2장의 엽서를 주었다. 황씨에 의하면 그에게 주어진 2장의 엽서상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여 그가 서문을 썼는데 이후 교정당국은 3차례나 그에게 엽서위에 쓴 내용을 다시 쓰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결국 황씨는 그의 서문을 3번이나 다시 쓰고서야 2장의 엽서 중 1장의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30. 또한 그가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 심지어 노트를 작성하거나 출판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글을 쓰는데도 그는 먼저 그가 쓰려는 주제를 신고하고, 교도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집필할 주제를 알리면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교도당국이 그에게 종이를 주었다. 더구나 그가 완성한 글은 교도당국에 의해 검열되었다. 황씨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글을 전혀 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가장 집필하기에 적절한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31. 황씨의 진술은 교도행정의 상황을 알려준다. 특별보고관은 황씨가 그의 구금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제한하에서는 집필활동에 집중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구금된 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상황이 적절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1990년 재소자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 제5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금사실에 의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소자는 관련 국가가 가입한 이상 다른 유엔협약들에 기한 권리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부속 의정서 등에 규정된 인권과 핵심적인 자유를 향유한다.”

노동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32. 특별보고관은 노동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노동분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는 이 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소위 ‘제3차개입금지’라 불리는 이 규정은 위반한 경우 최고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는 또한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해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연합체의 활동 및 목적과 중복되거나 이에 상충하는 노조나 노조연합체의 결성이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33. 특별보고관은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나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체포되거나 수배받고 있음을 우려한다.

34. 특별보고관은 노동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는 불평등만 아니라 노동권 관련 의사를 유효하게 집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단체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전통적인 여건과 그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잘 정돈된 견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속에서 개별 노동자들을 돕는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단체는 노동입법 제정 특별 노동자들을 돕는 지 등과 같이 그 소속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에 관한 공공의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이 노동조합단체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35. 특별보고관은 노동자의 이익 보호라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고려하면 1개 이상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관은 노동자가 그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노조가 효과적으로 그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여 다른 노동자와 연합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 새로운 노조의 결성 및 연합은 전에 존재하는 노조의 일을 저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는 없는 것이다.

36. 특별보고관은 노동조합법 제3조가 결과적으로 선택적인 노조의 결성이나 연합에 대해 일반적인 금지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합법적인 실현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37. 특별보고관은 또한 실제로 노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제도가 노동자들의 전문적인 활동과 발전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균형잡힌 의견들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자유롭게 찾고,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신의 노조의 일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그들의 노동권에 관한 조언을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조사위는 이러한 법적 제도가 현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연결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향수를 금지하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관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의 외곽에서 설립된 민주노총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38. 특별보고관은 보고관의 위임권한을 고려할 때,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만 유일하게 또는 주로 관련된 문제를 권고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의 자유가 의사와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보고관은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하여, 특히 1993년에 ILO 산하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문을 상기하고 싶어한다. 또한 두 개의 중요한 ILO협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98호 협약.

공연윤리위원회

39.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공연 예술가들은 발표전에 그 텍스트 또는 기록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공연법, 영화법, 그리고 영상매체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연윤리위원회는 공적 도덕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발표를 허가하는 것을 유보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그때로 공연윤리위원회는 발표를 허가하기전 공연예술가에게 제출한 작품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40.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사전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시스템도 국제인권규약하에서는 무효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본다. 그와 같은 제약의 적도화는 더 강하게 무효라고 추정된다. 보고관의 견해로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정보를 찾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호는 현재 공연윤리위원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표현물들을 사전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 필요해진다거나 필요할 때 비로소 심사에 착수해 함으로써 더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위원회의 공공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단을 대중적 경쟁시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필요한 보호가 무엇이든간에 이에 관한 대중적 식별력과 필요한 보호에 대한 평가의 단계를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허용에 관해 부당히 제약적인 정부의 기준

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막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사전제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특별보고관을 민주사회에 중요한 이 권리의 사전제약에 대해 공개된 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 절차에 남겨두는 데 관하여 여전히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할 것이다. 절차에 남겨두는 데 관하여 여전히

41. 특별보고관은 이전의 보고서 중 55번째 단락(E/CN. 4/1995/32)을 인용한다. 특별보고관은 이 단락의 보고서에서 그는 다수에 대해 손상과 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소수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같은 보호는 예술적 표현의 특수한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특히 공연예술을 주 단으로 표현된 의사들에 적용된다.

언론 매체

42. 특별보고관은 언론매체의 상황은 구체체 이래 진보하여 왔다고 알고 있다. 동시에 오늘날 언론은 수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압력들은 한편으로는 언론 자신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경쟁을 이겨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언론사 특히 소규모의 언론사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도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압력은 언론사 소유 구조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언론경영은 대개 최근 수년간 건축붐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온 국지적 사업인 소유권자 회사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인다. 편집의 독립성과 균형된 노사관계에 대한 견고한 전통의 결핍은 대대로 언론 전문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직장풍토를 낳게 되었다.

43. 덧붙여,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소송이 정부 구성원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인의 체포를 가져온 사례들을 알고 있다. 또한 비판적인 뉴스기사에 벌금이 부과된 것을 아는데 이런 벌금들은 관련된 언론제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정부제도는 실사 때때로 인격에 대한 비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평에 대해 개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적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깊은 신뢰와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언론매체가 자신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두려워 하는 풍토를 겪게 하여서는 안된다.

특별 보고관의 관심사항

44. 특별보고관은 한국방문하기 전과 방문하는 기간 동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한국정부로부터 얻고자 한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특별보고관은 만약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45. 보고관은 보고관의 한국방문후 6주후인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특별사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된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보고관이 관심을 나타낸 사람들중 일부가 집행유예되어 석방되었다고 통지받았다.

III. 권고안

46. 앞에서 설명한 주요 관찰과 관심사항에 근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방문기간 동안 한국정부의 높은 의견교환이 매우 건설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이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결의속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a)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그리고 국제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B규약)에 일치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b) 이른바 기존 질서를 반대하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repeal strongly

알려진 수감자들에게 그와 같은 전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옥이나 사회재활(Social Rehabilitation)제도하에서 수감이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소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처벌은 중지되어야 한다.

(c)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재소자는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 아래에서 재판을 받은 수감자의 경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B규약)하에서 제기되는 의무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심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B규약의 다른 의무조항들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별개로 생각되어질 수 없다.

(d) 한국정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개정은 노동쟁의나 단체협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well-informed)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e) 한국정부가 국내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B규약)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특히 (이러한 정비과정에) 일반적인 인권과 특별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노력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명시적인 국내법 제정이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f) 한국정부가 국내의 사법제도에 국제인권법 - 특별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 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판례법을 포함하는 적절한 인권자료를 사법부와 법관권 직종에 배포하고,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대해 배우는 세미나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한다.

(g) 한국정부가 구속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의 수감제도가 이미 제정된 사법행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h) 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행정적 간섭을 제한하고, 특히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전제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를 공적인 법정차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